

# 2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인권영향평가

# 보고서(요약)

2025. 10. .



한국경영인증원

## 1 2025년도 인권경영 추진 배경

-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 판단 기준에서 ‘인권 존중’이 핵심 가치로 떠오름. 이는 경영전략 수립, 리스크관리, 이해관계자 신뢰 구축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함. 1970년대 이후 ILO, UN, OECD 등이 기업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직·간접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흐름이 형성됨. 2000년대 들어 UN 비즈니스와 인권 이행원칙(UNGPs)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기업 인권경영의 국제적 기준이 본격화됨
- 오늘날 인권경영\*은 다국적 기업을 넘어 공공기관, 지방정부, 중소기업, 협력사까지 확산되고 있음. 조직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잡았으며,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2024년 EU에서 제정된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전 세계 공급망의 인권·환경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강제 규범으로 작동함.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협력사도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민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중심의 인권경영 선도가 핵심사안이 됨

- 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1976)
- ②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3자선언(1977)
- ③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1998)
- ④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1999)
- ⑤ GRI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2000)
- ⑥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2010)
- ⑦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2011)
- ⑧ IFC 성과기준(2006/2012)
- ⑨ UN 기업과 인권 구속력 조약 협상(2014~진행 중)
- ⑩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2024)

\* 인권경영이란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국내 인권경영제도 발전추이]

구분	주요 내용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2014.1.8)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2018.8.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제3차 기본계획 수립·공표</li> <li>• 국가인권위원회(2018.8.29)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발간 및 인권경영 실행 권고</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2019.2.18)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li> <li>• 고용노동부 (2019.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사항 추가된 「근로기준법」 시행</li> <li>• 법무부 (2019)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연구 보고서 통해 3단계 로드맵 및 인권실사 절차 가이드라인 제시</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2020.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추진전략」 발표</li> <li>• 행정안전부 (202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지표 신설</li> <li>• 행정안전부 (2020.6.)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발표</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2021.8.3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발표</li> <li>• 산업통상자원부 (2021.12.1.) K-ESG 가이드라인 발표</li> <li>• 법무부 (2021.12.28.)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li> <li>• 고용노동부 (2021.10.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객관적 조사 의무 및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조항 신설)</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2022.7.13.)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수립</li> <li>• 기획재정부 (2022.12.) 「글로벌 ESG 규범 대응 및 민간 확산 전략」 발표</li> </ul>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2024.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제4차 기본계획 수립·공표</li> <li>• 국가인권위원회 (2024)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개발·보급, 디지털 인권 강화, 정보인권 확대</li> </ul>

## 2 공공기관 및 연구원 인권경영 구축동향

### □ 공공기관

#### ① 한국가스연구원(2018)

- 인권침해 사건의 독립적 조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진정심의위원회’ 설치
- 외부 전문가 과반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 내부 ‘인권상담센터’ 개소, 피해자 상담 및 재발방지 체계 구축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0)

- SOC공기업 최초로 인권경영 전담조직 ‘LH 인권센터’ 신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 상담·조사·구제체계 마련
- 인권경영위원회 및 내부지침 제정으로 제도화 기반 강화
- 임직원 인권교육 정례화로 인권존중 문화 확산

#### ③ 국민연금공단(2024)

- ‘세계 인권의 날’ 맞아 8일간 ‘NPS 윤리·인권 주간’ 운영
- 온라인 인권 퀴즈, MBTI 기반 소통행사, 인권도서 전시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 시행
-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및 외부전문가 참여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④ 서울교통공사(2024)

- 인권존중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헌장’ 선포
- 관리자 150명 대상 갑질 근절 연극형 교육 실시
- 자회사·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형 인권문화행사 지속 추진 계획

#### ⑤ 한국철도공사(2025)

- 인권존중 경영체계 구축 성과로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취득
- 국제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 가이드라인 기반 체계 확립
- AI 기반 고충상담 챗봇 도입, 인권경영지수 신설, 고충예방전담사 제도 운영 등 혁신 추진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① 기관의 책무와 위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이 제시하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데 기여해야 할 책무를 가짐
-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공정책 싱크탱크로서 인권경영의 모범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 ② 연구 수행 및 협력 범위

- 세계경제, 무역·투자, 국제금융, 글로벌 공급망, 지역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분석·정책 제안을 수행함
- 중앙정부(기재부·산업부·외교부 등), 국회, 지방정부,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함
-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이 국내외 노동, 산업, 환경, 사회권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침

### ③ 인권경영의 통합 필요성

- 인권경영 원칙을 연구기획, 용역 발주, 연구 수행, 정책 자문, 국제협력 등 전 과정에 통합해야 함
- 입찰공고, 평가기준, 연구계약서, 국제공동연구 협약, 학술행사 운영 지침 등 모든 절차에 인권 기준을 반영해야 함
- 협력기관 및 파트너가 인권 규범을 수용·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인권친화적 연구문화를 학계 전반에 확산시켜야 함

### ④ 인권 실천의 구체적 방안

- 연구용역 입찰 시 취약계층(청년, 여성, 장애인, 지역 연구자 등) 참여·고용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연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연구참여자 보호 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음
- 계약 시 인권침해 예방 서약서(또는 인권조항) 제출을 필수화할 수 있음
- 평가항목에 인권·윤리 교육 이수 실적, 연구윤리·인권 관련 규정 보유 여부, 협력기관의 인권실사 계획 등을 정량화된 지표로 반영해야 함

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제도적 공개

- 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인권 보호, 차별금지, 연구참여자 권리 존중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의무를 가짐
- 인권경영 실천 결과는 ESG 공시, 경영공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보고·점검됨
- 축적된 자료는 학계, 연구기관, 민간부문이 참고할 수 있는 인권경영 표준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

⑥ 선도적 모델 구축 방향

- 자체 인권경영 역량을 체계화하여 대외경제·국제협력 분야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해야 함
- 표준 연구계약 조항, 연구용역 발주 가이드라인,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학술행사 운영 가이드라인 등 실무 지침으로 구체화해야 함
- 구축된 모델은 국내외 협력기관, 학술단체, 국제기구 등과 공유되어야 하며, 연구원이 인권친화적 연구문화 정착을 주도하는 공적 리더십을 수행해야 함

분야	상세 내용
인권경영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여 차별 금지, 참여자 권리 존중, 국제 인권규범 준수를 핵심 원칙으로 천명</li> <li>○ 이와 함께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마련해 연구 과정 전반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침에는 인권영향평가(HRIA) 절차, 위험등급화 기준, 시정조치(CAP) 프로세스, 모니터링체계 포함</li> </ul>
인권경영 추진조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감사실 내에 인권경영 전담 기능을 두고, 연구조정실 등과 연계한 내부 점검 구조를 운영</li> <li>○ 필요시 인권경영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원 정책과제·용역사업에 대한 인권 자문을 수행</li> </ul>
인권보호 활동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임직원·연구용역 참여자·협력사 직원 대상 인권·윤리 교육을 정례화하고, 직무·연구 분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li> <li>○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연구윤리 세미나, 일터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제 공동연구·학술행사에서도 참여자 권익 보장을 위한 지침을 시행</li> </ul>
인권영향평가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주요 연구과제·국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정기적으로 HRIA(인권영향평가) 실시함</li> <li>○ 연구 성과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취약집단에 대한 영향(무역 정책의 중소기업·노동자, 기후·환경 정책의 지역사회</li> </ul>

분야	상세 내용
	<p>등)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권고·시정계획과 함께 보고서 형태로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별 인권경영보고서와 ESG 공시를 통해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음</li> </ul>
인권침해 구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민원 및 불만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윤리 위반·부패·갑질·차별·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괄</li> <li>○ 민원 접수-사실조사-시정명령·구제·보상-재발방지 조치-이행점검으로 표준화되어 있음</li> <li>○ 익명 신고·신고자 보호·비밀보장·보복방지 제도 명문화</li> </ul>
인권경영 확산 및 성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연차 인권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책·지침·조치 실적·불만처리 현황을 공개하며, ESG·경영공시 항목에 인권성과 지표를 포함</li> <li>○ 내부 감사 및 외부 인증(인권경영 시스템 인증), 제3자 검증을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에 반영함</li> <li>○ 국제연구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경영 문화를 학계·정책영역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공적 리더십을 수행</li> </ul>

### 3 연구원 인권실태조사 실시개요

#### ① 조사 목적

- 기관의 인권경영 내재화 수준과 직원 체감도를 진단하고 개선 과제 도출
- 직원 개개인의 인권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잠재적 침해 요인 예방
- 성희롱·괴롭힘, 차별, 초과근무 강요, 의견 개진 자유, 연구윤리 관련 압박 등 종합적 파악
- 구제절차 접근성,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내부 규율 실효성 등 인권경영 체계의 신뢰도 점검
- 대외 협력 및 국제 교류 과정의 인권 리스크(개인정보, 차별 등) 관리 수준 진단

#### ② 조사 대상 및 방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직원(응답자 97명 기준)
- 자체 설문조사 방식(리커트 5점 척도, 다중선택, 경험보고 포함)
- 2025년도 인권실태조사 기간 중 실시

### ③ 조사 내용 및 평가영역

1. 인식 및 제도: 인권경영 관심도, 인권 존중, 교육 효과성, 의사소통, 신고·구제 인식, 경영진 관심 등
2. 경영활동 및 관계: 성·연령·장애 차별 부재, 성희롱 예방, 추가근무 강요 부재, 개인정보보호, 안전보건, 이해관계자 소통 등
3. 리스크 인식: 인권침해 관련성, 중요 분야, 침해 가능 권리, 주요 리스크 인식 등
4.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최근 1년 내 괴롭힘·갑질 경험 및 유형(차별·업무배정·배제·폭언·모욕·회식강요 등)

### ④ 조사내용 결정 배경

- 연구기관 내 실질적 인권 위험 요인을 다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함
- UNGPs, EU CSDDD 등 국제 규범 및 국내 인권경영 강화 정책(국가인권위·고용노동부·법무부 등)에 부응
- 연구기관의 정책 자문 기능상, 대외 신뢰성과 내부 제도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 증가

### ⑤ 실태조사 산출물 및 기대효과

- 진단: 정량·정성 데이터 기반으로 인권의식, 차별, 괴롭힘, 성희롱, 구제절차 신뢰도 등 객관적 진단
- 리스크 분석: 부문별 리스크 식별, 중대 리스크 개선 권고,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근거 마련
- 신뢰도 제고: ESG 공시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에 활용, 대외 신뢰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실무 적용: 교육·홍보·피해자 보호·감정노동 대응 등 구체적 실행 지침 마련

### ⑥ 조사의 종합 목표

- 연구기관의 인권경영을 제도·문화 양면에서 실질적으로 내재화
- 인권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연구원 내부의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 대외 협력 및 국제연구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인권 리스크까지 포괄 관리하는 체계 구축

## 4 연구원 인권실태조사 실시결과

### ①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직원 97명
- 조사 방법: 자체 설문(리커트 5점 척도, 다중선택·경험보고 포함)
- 주요 평가영역: 인식, 제도, 경영활동 및 관계

### ② 영역별 평균점수

- 인식 및 제도: 3.11점
- 경영활동 및 관계: 3.58점

### ③ 주요 결과 요약

- 경영활동·대외관계 영역(3.58점)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모성보호(3.99점), 협력업체 갑질 금지(3.89점), 개인정보 보호(3.74점) 항목에서 강점 확인됨
- 추가근무 강요 지양(3.62점), 장애 차별 부재 인식(3.73점) 등도 양호함
- 근로환경의 기본 윤리와 배려 문화가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있음
- 인식·제도 영역(3.11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지도(2.72점), 징계 기준 적정성(2.67점), 신고자 보호 신뢰(2.93점), 인권정책 인지도(2.84점) 항목에서 낮은 점수 기록
- 제도의 실효성보다 체감과 접근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제도 안내 및 반복적 노출을 통해 인식 개선이 필요함

### ④ 강점 요약

- 모성보호 제도 운영, 외부계약사 윤리 실천, 개인정보 보호 등은 우수 사례로 평가됨
- 직장 내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작동 중임
- 기관의 인권경영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음

## ⑤ 개선 방향 및 시사점

- 인권 제도와 정책의 가시성을 높이고, 임직원이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 강화 필요
- 구제절차, 신고채널, 보호장치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체감 신뢰도 제고 필요
- 인식 제고와 소통 개선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일 경우, 전사적 만족도와 신뢰도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 있음
- 이번 조사는 연구원의 인권경영이 안정된 기반 위에 있으며, 향후 소통 중심의 개선 전략을 통해 더 높은 성숙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줌

## 5 인권영향평가 실시개요

### □ 주체 및 범위

○ 평가기간 : 2025년 08월 07일 ~ 2025년 10월 13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5. 08. 07. : 인권영향평가 착수보고회(Kick-off)</li><li>- 2025. 08. 20. : 인권영향평가 지표 교육 및 인권경영 교육(대면)</li><li>- 2025. 08. 21.<br/>~ 09. 02. : 내부 자체평가 시행</li><li>- 2025. 09. 04. :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위원 현장실사(대면) 및 이해관계자 면담 시행</li><li>- 2025. 09. 26. :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li><li>- 2025. 10. 13. : 최종 보고서(안) 제출</li></ul> |
|--|

### ○ 평가 주체

- (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 담당자 자체 평가
- (외부) 한국경영인증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및 분석을 진행

### ○ 평가 범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 (기관운영)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 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권 보장, 외부 고객 인권 보호, 내부 직원 인권 보호, 정보인권보호 등 주요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

- (주요사업) 기관의 '연구사업' 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 ○ 평가 목적

- 기관의 경영활동이 임직원, 협력사, 노동조합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인권리스크,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인권경영 이행 수준 진단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예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인권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존중 경영에 기여하기 위함

### □ 인권영향평가 기본 사항

#### ①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 기관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방지·완화하고 그 노력을 대내외에 공개하는 절차
- 인권침해 예방, 신뢰 구축, 사회적 책임 강화, 법적 리스크 대응에 기여

#### ② 기본 절차

- 계획 수립 - 환경분석 - 체크리스트 작성·확정 - 평가 실시 - 결과 제출 - 경영진 심의 - 리스크 방지조치

#### ③ 운영 방식

- 국가인권위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기반 표준화
- 인권경영 담당자·관리자·실무자 대상 지표 교육 및 의견수렴
- 내부 자체점검 후 외부 전문가 실사 병행
- “보완필요” 항목 중심으로 개선과제 도출

#### ④ 적용 원칙

- 기관 규모·자원·리스크 수준에 따라 탄력적 적용

- 향후 연속적·일관적 실행

### ⑤ 중대성 평가

- 2024년 이후 도입
- 다양한 인권 이슈 중 우선 대응 사안 선별
- 평가 요소: 이해관계자 다양성, 침해 심각성, 피해자 수, 위법 여부, 구제 가능성, 정책 연계성, 업종 특성, 발생 장소 등
- 선정 기준: 세부항목의 리스크 분야별로 점수를 더하여, 항목별 점수가 11점 이상 일 경우 ‘주요인권이슈’ 로 선별, 개선점을 제시함

## □ 2025년도 주요사업 선정

### ① 선정 대상

- 2025년도 인권영향평가 대상 주요사업으로 ‘연구사업’을 선정함

### ② 선정 기준

- 연구사업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
- 「연구사업운영규정」 제2·3장에서 과업 발굴·배분 절차를 명문화함
- 과제 선정 기준은 정책적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 국가·지역 발전 기여도임
- 연구결과가 정부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되므로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이 주요 판단 기준임

### ③ 선정 목적

- 연구사업이 사회 각 계층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함
- 정책·통상·개발협력 등 국가 의사결정 반영 시 인권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기 위함
- 정책연구 과정에서 특정 집단 권익 소외나 개발도상국 취약계층 권리 침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함
- 연구원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대표 사업을 통해 평가하여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

### ④ 선정 사유

- 연구원이 직접 주관하고 매년 대규모로 수행되는 핵심 사업으로 기관 정체성과 직결됨
  - 연구자, 용역기관,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 정책 결과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대외경제, 통상협상, 개발협력, 기후·환경 등 복합적 인권 이슈를 포함함
  - FTA 협상, 개발원조, 기후정책 등 국제 인권 논란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에 해당함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 ▶ 위 요건을 종합할 때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타당성이 충분함

## □ 2025년도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확정

○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12개 분야 28개 항목 99개 지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2024년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의 지표인 총 11개 분야 27개 항목 93개 지표에서 ‘정보인권보호’의 추가 1개 항목 및 6개 지표를 더하여, 2025년에는 12개 분야 28개 항목 99개 지표를 확정하였음
- ESG 정책과의 연계 측면에서 환경권, 노동권, 비차별 및 인권경영 체제 등에 관한 기존 지표들의 평가를 심화하고 있음
- 특히 ‘12. 정보인권보호’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새로 반영되고 강조된 분야로서, AI 시대 도래에 따른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이번 인권영향평가 지표에 새롭게 반영하게 되었음

구분	분야	항목수/지표수	지표 추가 현황 (2024년 지표 대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24개	-
2	고용상의 비차별	4개/16개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개/02개	-
4	강제노동의 금지	2개/07개	-
5	아동노동의 금지	1개/02개	-
6	산업 안전 보장	3개/10개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개/05개	-
8	지식재산권 보호	1개/04개	-
9	환경권 보장	2개/03개	-
10	외부 고객 인권 보호	3개/14개	-
11	내부 직원 인권 보호	2개/06개	-
12	정보인권보호*	1개/06개	1개/06개
총계		28개/99개	+1개/+06개

\* 분야 12)는 2025년도에 신설된 분야임

○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1개 사업, 5개 항목, 22개 지표

-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연구원은 '연구사업'의 공공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국가정책에 대한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대내외 환경과 중장기 전략, 주요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당해 사업을 인권경영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1개 사업, 5개 항목, 22개 지표로 구성된 인권영향분석 체계를 확정함

구분	사업	항목수/지표수
1	연구사업	5개 / 22개

## □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분야별 세부 항목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경영헌장	24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16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2
4	강제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7
		해외사무소 강제노동 예방	
5	아동노동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2
6	산업안전 보장	사무실 안전	10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5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게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4
9	환경권 보장	환경정보의 공개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	외부 고객 인권 보호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4
		자료오류시 조치	
		고객 사생활 보호	
11	내부 직원 인권 보호	폭력 및 괴롭힘 예방	6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12	정보인권 보호	디지털 정보보호 및 AI 윤리성	6
<b>총계</b>			<b>9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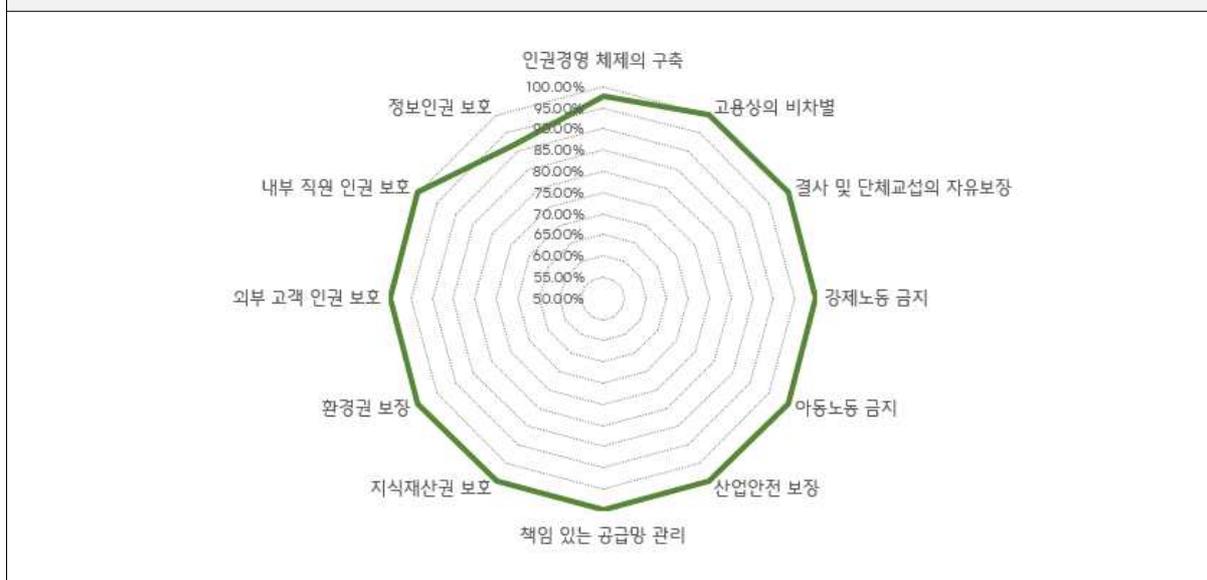
## □ 주요사업 세부 항목

연번	사업명	항목	지표수(개)
1	연구사업	사업의 인권체제	22
		과제선정	
		수행기관 선정	
		과제 수행 관리	
		근로자 인권	

## 6 인권영향평가 결과요약

□ 기관운영 종합점수 : 99.0% (198점 중 196점 획득)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달성률 99.0%로 우수함.
- ▶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권 보장, 외/내부 인권 보호는 우수함.
- ▶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분야, '12. 정보인권 보호' 항목은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함 (각각 보완필요 1개씩)



No.	분 야	결과				
		항목 (개)	배점 (점)	조정배점 (점)	득점 (점)	달성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4	48	48	47	97.9%
2	고용상의 비차별	16	32	32	32	10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2	4	4	4	100.0%
4	강제노동 금지	7	14	14	14	100.0%
5	아동노동 금지	2	4	4	4	100.0%
6	산업안전 보장	10	20	20	20	10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10	10	10	100.0%
8	지식재산권 보호	4	8	8	8	100.0%
9	환경권 보장	3	6	6	6	100.0%
10	외부 고객 인권 보호	14	28	28	28	100.0%
11	내부 직원 인권 보호	6	12	12	12	100.0%
12	정보인권 보호	6	12	12	11	91.7%
총점		99	198	198	196	99.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기관운영 부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달성률은 99.0%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⑫ 정보인권 보호, 그리고 주요사업인 ‘연구사업’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굴되었음
  - 보완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구제절차의 실질적 효과성과 접근 편의성뿐만 아니라, 시설 안전점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평가 등 작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주요사업 부문인 ‘연구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달성률은 97.7%로 우수한 결과를 보임
-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인권경영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을 통해 인권경영을 한층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인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인권영향평가를 병행하여, 인권경영이 조직문화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임. 향후에도 전 직원이 인권경영의 가치를 직접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 관련 사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함

<2025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3	1	0	0	0	24
2	고용상의 비차별	16	0	0	0	0	1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2	0	0	0	0	2
4	강제노동 금지	7	0	0	0	0	7
5	아동노동 금지	2	0	0	0	0	2
6	산업안전 보장	10	0	0	0	0	1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0	0	0	0	5
8	지식재산권 보호	4	0	0	0	0	4
9	환경권 보장	3	0	0	0	0	3
10	외부 고객 인권 보호	14	0	0	0	0	14
11	내부 직원 인권 보호	6	0	0	0	0	6
12	정보인권 보호	5	1	0	0	0	6
합 계		97	2	0	0	0	99

**<2025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종합 달성률 97.7%로 우수한 편임.
- ▶ 사업의 인권체제, 과제선정, 과제수행 관리, 근로자 인권 분야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수행기관 선정 분야에서 보완점 발굴됨

	내용	외부평가	평균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연구사업	사업의 인권체제	100	100
	과제선정	100	100
	수행기관 선정	90	90
	과제수행 관리	100	100
	근로자 인권	100	100

구분	분야	결과				
		항목 (개)	배점 (점)	조정배점 (점)	득점 (점)	달성률
1	사업의 인권체제	3	6	6	6	100.0%
2	과제선정	4	8	8	8	100.0%
3	수행기관 선정	5	10	10	9	90.0%
4	과제수행 관리	7	14	14	14	100.0%
5	근로자 인권	3	6	6	6	100.0%
<b>총점</b>		<b>22</b>	<b>44</b>	<b>44</b>	<b>43</b>	<b>97.7%</b>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7 중대성평가 결과요약

○ 중대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연구원 대상 주요인권이슈\*는 도출되지 않음

### <기관운영 중대성 평가결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인권영향평가결과						중대성평가결과			
	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해당 없음	이행율	이행 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	합계
<b>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b>										
1.1 인권경영헌장	6	5	1	0	0	92%	2	2	3	7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4	4	0	0	0	100%	1	2	3	6
1.3 인권경영 제도화 필요조치	5	5	0	0	0	100%	1	3	2	6
1.4 인권경영성과	5	5	0	0	0	100%	2	2	3	7
1.5 구제절차 마련	4	4	0	0	0	100%	1	2	3	6
<b>2. 고용상의 비차별</b>										
2.1 고용상 비차별	5	5	0	0	0	100%	1	3	2	6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6	0	0	0	100%	1	3	2	6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3	0	0	0	100%	1	3	2	6
2.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2	2	0	0	0	100%	1	3	2	6
<b>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b>										
3.1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2	2	0	0	0	100%	1	3	2	6
<b>4. 강제노동 금지</b>										
4.1 강제노동 금지	6	6	0	0	0	100%	1	3	2	6
4.2 해외사무소 강제노동 예방	1	1	0	0	0	100%	1	3	2	6
<b>5. 아동노동 금지</b>										
5.1 연소자 고용 금지	2	2	0	0	0	100%	1	3	2	6
<b>6. 산업안전 보장</b>										
6.1 사무실 안전	4	4	0	0	0	100%	1	3	2	6
6.2 임산부 및 장애인등 보호	3	3	0	0	0	100%	1	2	2	5
6.3 필수장비제공 및 교육실시	3	3	0	0	0	100%	1	2	2	5
<b>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b>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3	3	0	0	0	100%	1	3	2	6
7.2 모니터링 실시	1	1	0	0	0	100%	1	3	3	7

인권영향평가 항목	인권영향평가결과						중대성평가결과			
	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해당 없음	이행율	이행 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	합계
7.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관침해 방지	1	1	0	0	0	100%	1	3	3	7
<b>8. 지식재산권 보호</b>										
8.1 지식재산권 보호	4	4	0	0	0	100%	1	2	3	6
<b>9. 환경권 보장</b>										
9.1 환경정보의 공개	2	2	0	0	0	100%	1	2	2	5
9.2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	1	0	0	0	100%	1	1	2	4
<b>10. 외부 고객 인권 보호</b>										
10.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5	5	0	0	0	100%	1	3	2	6
10.2 소비자 사생활 보호	3	3	0	0	0	100%	1	3	2	6
10.3 고객 사생활 보호	6	6	0	0	0	100%	1	3	2	6
<b>11. 내부 직원 인권 보호</b>										
11.1 폭력 및 괴롭힘 예방	4	4	0	0	0	100%	1	3	3	7
11.2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2	2	0	0	0	100%	1	3	3	7
<b>12. 정보인권 보호</b>										
12.1 디지털 정보보호 및 AI윤리성	5	4	1	0	0	90%	1	3	3	7

\* 주요인권이슈: 각 세부항목에서 '1) 이행수준, 2) 영향심각도, 3) 발생가능성' 의 점수 총합이 11점 이상일 경우, '주요인권이슈' 로 선정하고 개선사항 및 권고의견을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별도, 혹은 공통으로 도출함